

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제1차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7. 12) 상정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제1차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7. 1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3조의3 → 제15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연계된 개정인가?	○ 연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18호
의결 년월일	2007. 7. 19 (제137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3조의3 → 제15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조의3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을 각각 “제15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제15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연서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연서 주민수) ----- ---제15조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